



제출하는 곳	대행검사기관(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, 선급법인)	처리부서	지역별 사무소
수 수 료	대행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	처리기간	25일
유 의 사 항	<p><input type="checkbox"/> 벌칙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및 그 시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최초검사: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</li> <li>○ 정기검사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</li> <li>○ 중간검사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두번째 검사기준일 또는 세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</li> <li>○ 연차검사: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매 검사기준일 전후의 3개월 이내(중간검사를 받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은 제외한다)</li> <li>○ 임시검사: 선박의 시설 또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할 때,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밖에 「선박안전법 시행규칙」 제21조에 따른 검사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선박의 정기검사, 중간검사,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○ 위험물을 적재·운송하거나 저장하려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○ 유조선·산적화물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(액화가스산적운송선은 제외한다)의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○ 특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</li> <li>○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</li> </ul>		